

가맹점 준수사항

부정사용 금지

- 비허용 상품(서비스)의 판매(결제)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비허용 상품(서비스)을 판매하는 행위
-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실제 판매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
-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(현금화 등) 등

이용자 부정사용 요청 시 응대 방법

- 현금화 요청 시, 여신전문 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법적 처벌됨을 안내하고 현금화 요청 불응
- 비허용 상품(서비스)의 판매 요청 시, 전북에듀페이지원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비허용 상품(서비스)의 구매가 불가함을 안내

가맹점 홍보물 부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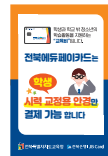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배포한 가맹점 스티커 및 이미지 활용
- 가맹점 출입문 및 결제단말기 주변에 스티커 부착
- 교육물품만 결제 가능 안내 POP를 결제단말기 주변에 비치



스티커(예시)



POP



POP_안경용

가맹점 경고/해지

가맹점 경고/해지 기준

- 등록된 가맹점 중 아래의 사유로 적발될 시 가맹점 경고/해지 가능
- 가맹점 경고 조치는 누적 관리(해지 또는 업체명 변경 신청 시 소멸되지 않음)

1. 허용되지 않은 상품(서비스)를 판매(안내)한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2.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전북에듀페이 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3. 가맹점 홍보기준을 미준수한 경우(1회 적발 시 경고,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)
4. 부당거래(현금화) 등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
5. 휴·폐점한 가맹점
6.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경우

가맹점 경고/해지 절차

부정사례 발견 시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 전북에듀페이카드 부정사용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으며, 신고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는 철저히 관리됩니다.

- 전북에듀페이카드 “부정사용 신고센터” 로 접수된 경우 : 사례 조사 후 조치
 - 수시로 운영되는 현장점검 또는 모니터링 등에 의해 부정사례 확인 시 : 가맹점 해지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해지 조치
- ※ 미스터리쇼퍼 형식으로 가맹점 방문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

가맹점 정보변경 방법

- 가맹점 정보 변동 시에는 기 등록된 가맹점 해지 후 신규 등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

- 전북은행 전북에듀페이 전용 고객센터 : 1588-2255(업태와 종목)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듀페이·학습지원 063)239-0852
- 전북교육콜센터 063)1396

가맹점주용 안내서



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안내서

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신청 업체 중 승인 기준에 따라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업체로
2024년도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부터 적용됨

사업 안내

전북에듀페이카드란?

전북에듀페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진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이며 바우처(전북에듀페이카드)로 지급하기 위한 특화카드입니다.



발급 대상 |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

발급 형태 | 전북에듀페이 전용 카드 발급(운영카드사 : 전북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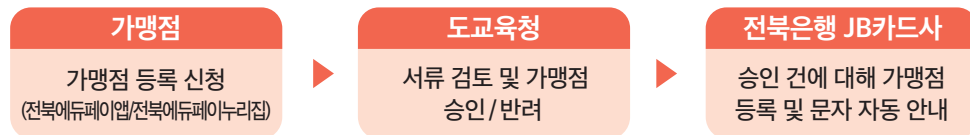
※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반납됩니다.

※ 바우처 지원비를 모두 사용한 경우, 본인 결제계좌와 지급 연계하여 카드 사용 및 가맹점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자격 요건

- KB카드사의 가맹점 중 도내 주소를 둔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이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범위에 해당하는 업체
※ 사용범위에 해당하나 업태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KB카드사를 통해 업종 변경(1588-1788) 후 가맹점 신청
- 전북에듀페이카드 지원 목적에 맞는 상품(서비스)을 취급·운영하는 업체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승인한 업체 또는 사업자
※ 대형(할인)마트 및 온라인 업체 사용 불가

등록 신청 및 승인 절차



1. 전북에듀페이카드 가맹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
2.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가맹점 검토 및 승인
3. 전북은행 JB카드사에서 가맹점 시스템 등록
4. 등록 완료 후 가맹점주에게 문자 자동 안내



신청 바로가기

가맹점 신청 가능 업종 및 품목

사용범위(업종)	세부 업종 및 품목
서점	• 도서, 문제집, 문구류 등
문구점	• 문구류, 미술용품, 연필깎기 등
화방/악기	• 음반, 악기(악기부속품), 악보 등 • 미술·서예·공예 등의 도구 및 재료 등
컴퓨터(주변기기포함)	• 컴퓨터 및 주변기기(키보드, 마우스, 전산 소모품 포함)
교육(학습)기자재	• 학습용 기구 및 재료
독서실/스터디카페	• 독서실, 스터디카페
문화체험	영화관 • 영화 관람
	공연장/전시장 • 연극, 공연, 각종 전시장(미술관, 박물관, 과학관 등) 등 오프라인 결제 가능한 곳
	문화체험활동 • 도내 각종 문화체험시설 및 공방 등 문화체험활동

사용범위(업종)	세부 업종 및 품목
스포츠	스포츠 활동 • (종목) 탁구, 축구, 농구, 배구, 배드민턴, 줄넘기, 야구, 스케이트, 하키, 테니스, 핸드볼, 수영 등 학교스포츠클럽 또는 육성종목 및 휘트니스, 에어로빅, 요가, 필라테스, 검도, 합기도, 유도, 복싱, 볼링, 롤러스케이트, 방승댄스 등 학생 진로 및 취미 관련 종목 • 체육시설이용, 실내체육시설 • 놀이공원(입장료 및 놀이시설 이용료)
	스포츠 용품 • 라켓, 공, 수경, 수영복, 자전거 등 기본 필수 품목
학원	예·체능학원 • 음악, 미술, 무용, 스포츠 등 예·체능 교육 분야 학원 및 문화센터
	진로(직업) 체험 관련 학원 • 진로(직업) 체험 관련 학원, 컴퓨터, 자동차 학원 등
진로·적성검사(심리상담·아동발달센터)	• 진로심리검사, 진로적성검사 등
기타 교육	• 안경점(학생 본인 시력 교정용 안경만 가능), 교복

비허용 또는 예외적 허용 업종 및 품목

※ 키인 승인 등 비대면 결제 불가

※ 업종 특성에 따른 비허용 제품(서비스) 관리 방안 반드시 작성 제출 : 미제출 시 승인 불가

사용범위(업종)		비허용	예외적 허용
서점		• 학원 겸용 서점 • 학습활동과 무관한 곳즈 • 유가증권(문화상품권, 도서상품권 등 각종상품권(쿠폰))	
문구점		• (물품) 식음료, 팬시, 생활용품, 화장품 등 학습 관련 물품 외 일체 • (업종) 문구를 취급하나 먹거리 또는 일상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집화점 (예: 마켓겸문구점, 학교매점 등)	
화방/악기		• 교육물품 외 일체	
컴퓨터 (주변기기 포함)		• 왓치, 닌텐도, 게임기, 기타 게임 관련 소모품 등 학습과 무관한 기기 일체 • 생활전자제품 일체 • 카드 합산 결제	• 카드 합산 결제 (가족관계 증명 시)
교육(학습) 기자재		• 교육물품 외 일체 • 교과 관련 학원 및 교습소 겸 교구판매	
독서실/스터디카페		• 교과 관련 학원(공부방) 겸용 관리형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•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/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	
문화체험	영화관		• 영화관 내 팝콘 등 이용
	공연장/전시장	• 온라인 예약 결제만 가능한 공연 등	
	문화체험		
스포츠	스포츠활동	• 학생(청소년) 본인 이외 보호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• (업종) 당구, 골프, 성인 대상 무도(댄스) 학원 등	• 놀이공원 내 식음료
	스포츠용품	• (품목) 의류(모자, 가방 등 피복류 포함) 및 신발류 일체(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) • (업종) 의류(모자, 가방 등 피복류 포함) 및 신발류 등 주요 취급 업체	
학원	예체능학원	• 교과 관련 보습학원(단, 학교 밖 청소년은 보습학원 이용 가능) • 학생(청소년) 본인 이외 보호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	
	진로(직업)체험 관련 학원	• 학생 이용 부적절 분야	
진로·적성검사(심리상담·아동발달센터)		• 학생의 진로적성, 진로심리 검사와 무관한 치료 등 치료지원비 항목과 중복 불가	
기타교육	안경점	• 학생(청소년) 이외 보호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 • 콘택트렌즈, 선글라스 등 학생 시력 교정용 안경 외 품목 일체 • 콘택트렌즈 단독 취급업체	
	교복	• 교복 외 품목 일체	